

2026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 09. 28.

완 주 군 수

1. 정기검사 기간, 일정 및 장소

- 검사기간 : 2026. 11. 09.(월) ~ 11. 16.(월) 09:00 ~ 16:00
 - ※ 주말·공휴일 및 점심시간(12 ~ 13시) 제외
- 일정 및 장소

연번	검사일자		검사장소	대상지역
1	11. 09.(월)	09:00~16:00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삼례읍
2	11. 10.(화)	09:00~16:00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봉동읍, 용진읍
3	11. 11.(수)	09:00~16:00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고산면 비봉면, 화산면 경천면, 운주면
4	11. 12.(목)	09:00~12:00 (오전)	이서면 행정복지센터	이서면
		13:30~16:00 (오후)	구이면 행정복지센터	구이면
5	11. 13.(금)	09:00~12:00 (오전)	상관면 행정복지센터	상관면
		13:30~16:00 (오후)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소양면, 동상면
6	11. 16.(월)	09:00~16:00	소재장소 정기검사*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업소

* 소재장소 정기검사는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자에 한합니다.
※ 해당일에 검사를 받지 못하신 분은 인근 검사장소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기검사 의무자: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3.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

(관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 10톤 미만 및 이상의 전기식지시 저울을 함께 사용하는 분은 10톤 이상 저울 재검정 시 10톤 미만 저울도 재검정을 받는 것이 비용이 절감됩니다.

4. 정기검사 면제 대상

- 2025년 또는 2026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5.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붙임 : 별지 제21호서식]

-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6.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정기검사 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는 저울의 경우 수시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수시검사에 발생하는 비용은 피검사자(저울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7. 문의사항 : 완주군 수소신산업담당관 신재생에너지팀 (☎ 063-290-2422)

붙임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 1부. 끝.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대상 계량기	계량기의 소재장소		정기검사기일		
	종류	형식 또는 규격		수량	
신청 사유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받을 사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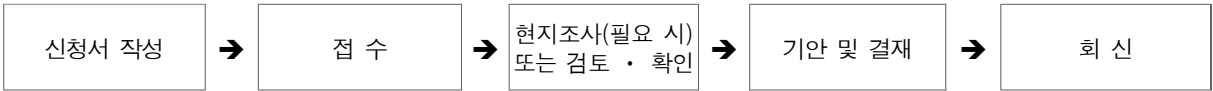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 표준원 장이 고시한 금액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계량업무 담당 부서)